통영케이블카 광고물 위치도



케이블카 상부역사 광고물 위치도



불 임 2 통영 케이블카 광고물 현황

순번	위치	규 격	면적 (㎡)	조명 여부	광고유형	수량 (개)	шп
1	곤돌라 외부(옆면)	0.8m×0.8m (2면)	60.16	Х	PVC CAL	1	사용수량 35대
2	곤돌라 내부(옆면)	0.8m×0.4m	15.04	Х	PVC CAL	1	사용수량 35대 2020. 1. 1. 이후 사용가능
3	곤돌라 내부(의자위)	1m×0.1m (2면)	9.40	X	PVC CAL	1	사용수량 35대
4	곤돌라 내부(상단)	0.8m×0.15m	5.64	X	PVC CAL	1	사용수량 35대
5	곤돌라 외부(바닥)	1.3m×1.2m	73.32	Х	PVC CAL	1	사용수량 35대
6	상부역사 (탑승장)	11m×1m	11.00	X	비조명형	1	2020. 1. 1. 이후 사용가능
7	상부역사 1층	2.5m×1.7m	4.25	0	조명형	1	-
8	상부역사 1.5층	3.1m×2.5m	7.75	Х	비조명형	1	-
9	상부역사 2.5층	3.1m×2.5m	7.75	Х	비조명형	1	-
10	상부역사 3.5층	3.1m×2.5m	7.75	Х	비조명형	1	-
11	상부 활차기둥	2m×2m(2면)	8.00	Х	포맥스부착	1	-
12	상부 엘리베이터실	1.5m×15m	22.50	Х	비조명형	1	-
13	하부역사 [1층] 1	2.5m×1.7m	4.25	0	조명형	1	-
14	하부역사 [1층] 2	2.5m×1.7m	4.25	0	조명형	1	-
15	하부역사 [1층] 3	2.5m×1.7m	4.25	0	조명형	1	-
16	하부역사 [1층] 4	2.5m×1.7m	4.25	0	조명형	1	-
17	하부역사 (1층) 5	3.5m×2.5m	8.75	0	조명형	1	-
18	하부역사 (1층) 6	3.5m×1.7m	5.95	0	조명형	1	-
19	하부역사 (탑승장) 1	3.5m×1.7m	5.95	X	비조명형	1	-
20	하부역사 (탑승장) 2	6m×3m	18.00	Х	비조명형	1	-
21	하부역사 (탑승장) 3	6m×3m	18.00	X	비조명형	1	2019. 6. 1 이후 사용가능

순번	위치	규 격	면적 (㎡)	조명 여부	광고유형	수량 (개)	ШП
22	하부역사 [1층] 7	3.5m×1.7m	5.95	0	조명형	1	19. 10. 16 이후 사용가능
23	하부역사 (1층) 8	1.5m×1.7m	2.55	0	조명형	1	20. 1. 1 이후 사용가능
24	하부역사 [1층] 9	3.5m×1.7m	5.95	0	조명형	1	-
25	하부역사 [1층] 10	3m×5m	15.00	0	조명형	1	-
26	하부역사 [1층] 11	2.5m×1.7m	4.25	0	조명형	1	-
27	하부역사 [1층] 12	1.5m×2m	3.00	0	조명형	1	-
28	하부역사 [1층] 13	2.5m×1.7m	4.25	0	조명형	1	-
29	하부역사 [1층] 14	2.5m×1.7m	4.25	0	조명형	1	-
30	하부역사 (1층) 15	2.5m×1.7m	4.25	0	조명형	1	19. 9. 1 이후 사용가능
31	하부역사 [1층] 16	2.5m×1.7m	4.25	0	조명형	1	-
32	하부역사 [1층] 17	2.5m×1.7m	4.25	0	조명형	1	-
33	하부 활차기둥	5m×2m(2면)	20.00	Х	포맥스부착	1	-
34	하부 선로 잔디밭	7m×10m	70.00	Х	비조명형	1	-
35	하부 정비고 전면	12m×2m	24.00	Х	비조명형	1	-
합 계			478.16			35	

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

- 재산의 표시
 - 소 재 지 :
 - 사용대상 :
 - 사용수량:
- 사용기간:
- 사용목적:
- 사용료:귀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.
- 사용조건 : 귀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.

위와 같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:

상 호:

대표자 : (인)

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귀하

광고물 설치 및 운영 시 주요 유의사항

□ 광고물 설치기준

- <u>광고물</u>은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6조의 <u>불연재료(이하 "불연재료"라</u>한다) 또는 동규칙 제7조의 **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함**
 - * 스틸, 알루미늄, 방염시트지 등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 사용
 - ※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(방염필증) 및 사용자재 내역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사 제출
- <u>광고물 설치시 벽면으로부터 5C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</u>하여야 하며, <u>모서리는 직각이 되</u> 지 않도록 해야함
 - * 광고물 설치시 광고판이 탈락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고, 광고물 두께 5cm 초과시 매립하여 설치
 - ** 광고물 제작시 모서리를 45도 경사지기 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통해 모서기가 직각이 되지 않도록 처리
 - ※ 기타, 광고물 설치기준은 관련법령 및 통영관광개발공사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.
- □ 광고물 설치 및 철거·이설 방법 * 시설물 설치·철거 및 운영 관련 제비용 계약상대자 부담
 - <u>광고물</u>의 사양, 디자인, 구조도, 자재, 기능, 설치 및 철거방법, 지장물 이설방법, 작업일정 등에 대한 제작 및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및 설치, 철거, 이설 추진
 - <u>설치 및 철거, 시설물 보수, 광고물 교체 작업</u>은 케이블카 이용고객 안전 및 건물 내부 점포운영사 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지정시간 준수 ★ 야간(21:00 이후)에 시행하며,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광고물 운영 및 유지관리

- 성평등 실현을 위해 광고 수주, 제작 등 업무수행시 광고물에 대한 성인지 관점을 고려해야 함
- **광고물 게폐첨시 시안 및 작업일정** 등 세부내역을 포함 **사전 승인**을 받아야 함
 - ※ 세부내역 : 광고명, 광고주, 위치, 광고기간, 광고시안(사진), 작업일정, 작업책임자 등
- 케이블카 이용고객 안전 및 유지관리상 위해가 없도록 **정기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 시행**

성인지 관점 고려 확인서

당사는 통영관광개발공사로부터 허가받은 통영 케이블카 광고사용권과 관련하여,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취지에 적극협조하여 광고 수주, 제작 등의 업무 추진 시 아래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1.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
- 1.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
- 1.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
- 1.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
- 1.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,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
- 1. 부부, 연인,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
- 1.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,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
- 1. 피해자를 부정적, 소극적 시각(혹은 희화화) 으로 바라보거나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가
- 1. 여성 / 남성 또는 특정 연령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않는가
- 1. 가족 구성원을 한정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구축하고 있는가
- 1. 가족 내 역할을 고정하고 있지 않는가

0000년 00월 00일

0000 대표 000 (서명 또는 날인)

허 가 조 건

제1장 총 칙

제1조(사용목적)

공유재산의 사용목적물 운영사업자인 "사용인"은 본 허가서 조항 등에 의하여 동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이 허가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- 1. 『사용목적물』이란 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"사용허가기관"의 시설물과 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 및 이에 부대하는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.
- 2. 『사용료』란 사용인이 사용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.
- 3. 『사용허가기관』이란 사용목적물에 대한 유상사용허가를 하는 통영관광개 발공사를 말한다.
- 4. 『"사용인"의 피고용인』이란 공유재산의 사용목적물 내에서 "사용인"의 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원 및 기타 "사용인"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자를 칭하며, "사용인"은 그 피고용인에 대하여 노동법규 및 민·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제3조(사용목적물 현황)

사용목적물은 벽면광고 00개로 총면적은 478.16㎡이며, 세부현황은 별첨 1로 한다.

제4조(허가기간)

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3년간)로 한다.

제 2장 사 용 료

제5조(사용료 산정)

① 첫해의 사용료는 낙찰금액인 금_____원(부가세 별도)으로 하며,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.

- ② 재산가격은 매년 사용 시작일전 "사용허가기관"이 의뢰한 원가조사기관에서 산정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- ③ "사용인"은 허가받은 사용목적물 외 프로모션 및 랩핑광고를 "사용허가기관"의 승인하에 할 수 있으며, 이때 발생되는 사용료는 "사용허가기관"이 의뢰한 원가조사기관에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사용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용료 납부 등)

- ① 최초년도 사용료는 계약체결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, 2차년도 이후에는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1년분 전액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출하되 사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.
- ③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고지한다.
- ④ 사용료의 미납으로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는 무효가 되고, 기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관련법령에 의거 귀속 조치하고, 당해 시설물은 입찰에 부친다.

- ⑤ 사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,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이를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⑥ 사용료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정해진 이자를 붙여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, 분할납부시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급이행보증금 또는 증권을 선납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리비 등의 납부)

"사용인"은 사용목적물의 운영에 있어 전기료 등 관리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"사용허가기관"이 산정한 방법에 의거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3장 계약보증금

제8조(계약보증금)

- ① "사용인"은 사용허가의 보증 및 이행을 위하여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"사용허가기관"에게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시 보증기간의 초일은 사용허가기간 개시일(2차년도 이후는 갱신사용 시작일), 만료일은 매년 갱신사용 종료일(사용허가 마지막 해는 사용허가종료일) 다음날로부터 90일 이후로 한다.
- ③ 계약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사용목적물은 새로운 사용인 선정 절차를 거친다.
- ④ "사용인"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관련법령에 의거조치한다.
- ⑤ "사용인"은 계약보증금으로 사용료 등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다.
- ⑥ "사용인"이 "사용허가기관"에게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사용기간 종료 후 관리비 등 각종비용과 기타손해배상, 기타 사용허가서상의 채무 등 "사용허가기 관"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이 체납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

고 그 잔액을 반환하며, 계약보증금으로 전부를 청산할 수 없을 경우 "사용인" 은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4장 관 리 · 운 영

제9조(허가받은 업무의 범위)

"사용인"이 허가받은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1. 허가 받은 범위내 사용목적물의 제작 및 설치
- 2. 사용목적물의 게, 폐첨 등 전박적인 광고 대행
- 3. 사용목적물(전등 등 전기시설물 포함)의 보수 및 철거
- 4. 사용목적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

제10조(사용목적물 유지관리)

- ① "사용인"의 영업에 필요한 사용목적물과 설비는 원칙적으로 "사용인"의 부담으로하며 사용목적물의 설치 또는 변경 시 "사용허가기관"의 사전 승인을받아야 한다.
- ② 사용목적물의 신설 또는 변경은 본래 구조물을 변경·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"사용허가기관"에게 기부채납된 것으로 한다.
- ③ "사용인"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도면 및 사업계획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"사용허가기관"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비용은 "사용인"의 부담으로 한다. 이 경우 사용목적물의 통일성을 기하기위하여 "사용허가기관"이 지정한 책임자가 시공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.
- 1.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의 게·폐첨 또는 교체 및 규격변경
- 2.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의 장소 변경
- 3.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 외 추가 설치

제11조(손해보험 등의 가입)

① "사용인"은 사용목적물에 대하여 "사용허가기관"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

- 여 사용목적물에 대한 (화재)손해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, 그 증서를 "사용허가기관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(화재)손해보험은 사용목적물의 낙찰금액(부가가치세 제외)을 기준으로 하며,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용목적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정한 보상한도를 적용한다.
- ③ "사용허가기관"이 당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이미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납부한 경우, "사용인"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"사용허가기관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통지의무)

"사용인"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, 지체 없이 필요서 류를 첨부하여 "사용허가기관"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- 1. 법인의 주소, 상호,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
- 2. 자본 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
- 3.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
- 4. 기타 "사용인"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

제13조(시민서비스)

- ① "사용인"은 사용 목적물의 설치 및 교체등의 작업 시 케이블카 이용객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.
- ② "사용인"은 기타 시민 불편·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제5장 준 수 사 항

제14조(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)

"사용인"은 "사용허가기관"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용목적물 일체를 사용 또는 유지·관리함에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목적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.

제15조(책임과 의무)

- ① "사용인"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·허가 사항이나 신고 사항을 영업개시일 전에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"사용인" 및 "사용인"의 피고용인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.
- ③ "사용인"은 화기 및 전기·수도시설 등 제반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④ "사용인"은 사용목적물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.
- ⑤ "사용인"은 "사용허가기관"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(양질의 서비스 제공, 정보제공, 친절의무 등)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- ⑥ "사용인"은 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의 관리·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·재산상 또는민·형사상 피해가 발생할 시, 모든 책임을 진다.
- ⑦ "사용인"은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"사용허가기관"의 경영 및 기술상의 정보 등을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, 허가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(행위제한)

- ① "사용인"은 "사용허가기관"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
- 2.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
- 3.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,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
- ② "사용인"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1. 술, 담배, 대부업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
- 2. 음란, 도박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
- 3.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·심령술 등의 광고
- 4. 타인의 저작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광고

- 5. "사용허가기관" 또는 특정인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광고 6. 성형광고 등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회 일반통념상 시설물 환 경 및 관리운영에 저해되는 일체의 광고
 - 제6장 허가의 변경, 해지 및 명도

제17조(사용목적물의 변경)

"사용허가기관"은 필요한 경우 허가 사용목적물의 위치, 수량(면적), 형태, 철거 등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공사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, 이로 인한 "사용인"의 손실에 대해서는 "사용허가기관"이 보상할 수 있다.

제18조(허가 취소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"사용허가기관"은 이 허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- 1. "사용인"이 연간 사용료(분납 시 포함)를 정해진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3개월 연체한 경우
- 2. "사용인"이 사용목적물을 "사용허가기관"의 승인 없이 전대, 공동운영, 양도 하였거나 담보설정을 하였을 때
- 3. "사용인"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본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"사용허가기관"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첨하는 경우
- 5. "사용인"이 "사용허가기관"에게 발행, 배서, 인수, 보증, 교부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된 경우
- 6. "사용인"이 상표법, 저작권 등 지식재산법규, 공정거래 관련법규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"사용허가기관"의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
- 7. "사용인"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민ㆍ형사상 문제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한 경우
- 8. 본 허가서 제15조(책임과 의무), 제16조(행위제한) 및 제21조(공증)를 위반한 경우
- 9.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에 "사용허가기관"이 필요할 때
- 10.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

- 11. "사용인"이 당좌거래 정지,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
- 12. "사용인"이 제3자와의 채권 채무관계로 제소되어 상품 등이 압류당하여 허가 이행이 불가할 경우

제19조(허가 취소요청)

- ① "사용인"은 허가기간 중 사용목적물의 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"사용인"의 요청으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시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등은 관련법령에 의하며, 이 경우 "사용인"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"사용허가기관"은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.

제20조(명도)

- ①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"사용허가기관" 의 기본시설을 제외한 "사용인"이 부가한 시설물 등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하며, 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명도계획서를 "사용허가기관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8조(허가취소)에서 정한 "사용인"의 귀책사유로 본 허가가 해지된 경우와 허가 종료 이후 "사용허가기관"이 지정한 명도일까지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이 원상회복 및 명도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은 "사용허가기관"에게 전액 귀속된다.

제21조 (제소전 화해 등)

"사용인"은 "사용허가기관"이 요구하는 경우 "사용인"의 준수의무를 기재한 사용허가시설의 명도에 관한 제소 전 화해신청에 응하거나 「공증인법」 제56 조의3에 의한 강제집행 수락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.

제7장 보 칙

제22조(연체료의 징수)

- ① "사용허가기관"은 "사용인"이 사용료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·고지하여야 한다.
- ② 1항에 의한 연체료는 지정기일 다음 날부터 일할계산하며,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료율을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한다.
- 1.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: 연 12퍼센트
- 2.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: 연 13퍼센트
- 3.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: 연 14퍼센트
- 4.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: 연 15퍼센트

제23조(변상금의 징수)

"사용인"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허가시설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사용허가취소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 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4조(조문해석)

- ① 본 허가서에 약정한 조문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"사용허가 기관"과 "사용인"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여 상호간에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.
- ② 본 허가서에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법령의 규정과 계약관습을 따르기로 한다.

제25조(재판의 관할)

- ① 본 허가조건의 이행 중 "사용허가기관"과 "사용인"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상호 성실히 노력한다.
- ② 본 허가와 관련한 소의 제기 시 관할 법원은 공유재산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26조(일반법령의 적용 등)

- ①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, 동 조례 시행규칙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 등을 따르기로 한다.
- ② 본 허가조건 각 조항의 해석상 상호간에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며,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.